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청에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학예연구사 1명)을 증원하고,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19 대응국 1개 과 및 화재예방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4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285”를 “28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2”를 “4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6”을 “37”로 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4]

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(제24조제1항 관련)

조직	정원
장비기술국	1명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소방청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85</u>	<u>286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42</u>	<u>43</u>	+1
3급 또는 4급 이하	<u>36</u>	<u>37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8